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4를 삭제한다.

제6조의 제목“(수·위탁 분쟁조정신청서 등)”을“(수·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 제17조 전단”을 “영 제17조”로, “분쟁조정신청서”를 “분쟁조정요청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7조 전단”을 “영 제17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분쟁조정신청”을 “분쟁조정요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신청하기”를 “요청하기”로, “신청인”을 “요청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른 수·위탁 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수·위탁 분쟁조정요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
요청인	상호·법인명 또는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 전화번호
	주소
	매출액
피요청인	상호·법인명 또는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 전화번호
	주소
요청취지 및 원인	※ 별지 작성 가능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·위탁 분쟁의 조정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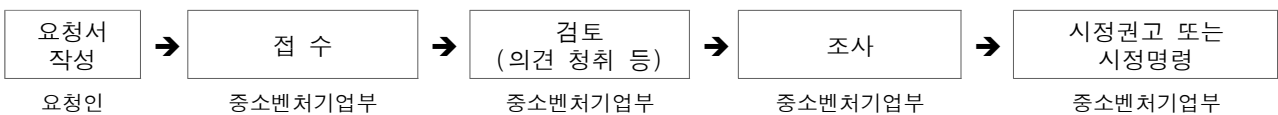
요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수·위탁 분쟁조정요청 사유서 1부 2. 수·위탁 분쟁조정을 요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(요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수·위탁 분쟁조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
신청인	상호·법인명 또는 조합명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	
	매출액	
피신청인	상호·법인명 또는 조합명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
	주소	
신청취지 및 원인	※ 별지 작성 가능	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9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·위탁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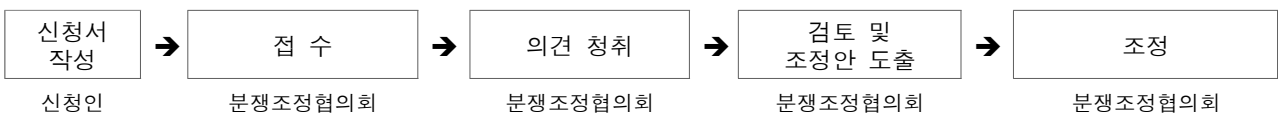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 귀중

첨부서류	1. 수·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1부 2. 수·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(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②영 제17조 전단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.

1. 수·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
2. 수·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(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 한한다)

③영 제17조 후단에 따른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수·위탁 분쟁사전조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수·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)

법 제28조의2제1항 전단에서 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별표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

②영 제17조-----

--.

1. ----- 분쟁조정요청 -----
--
2. ----- 요청하기-----

-----요청인-----

③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른 수·위탁 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.

<삭 제>

2. 별표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

제12조(규제의 재검토)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1. (생략)
2. 제5조의4에 따른 별점의 부과기준 및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별점기준

제12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